

2025년 송파구 특별신용보증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송파구 특별신용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1. 보증규모: 225억

2. 대 상: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지원 제외대상

-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재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보증제한업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붙임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업종 등 참고)

3. 보증금액: 업체당 5천만원 이내

4. 지원조건

가. 보 증 료 ▮ 신규지원: 연 0.8%

↳ 추가지원: 연 1.0%

나. 대출금리: 3개월 변동금리(CD금리·신용등급·이자지원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시, CD금리 ±0.1% (단, 자금 소진 전까지)

다.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등

5. 보증방법: 신용보증재단 심사 후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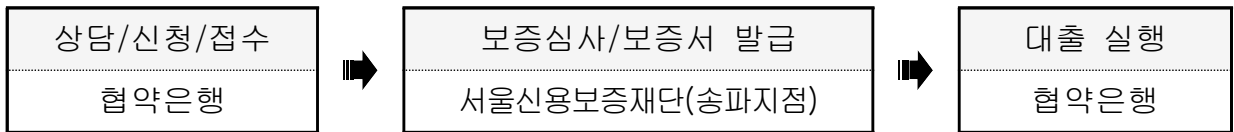
- 대표자 신용평가(재단, 은행 공통)와 은행 자체평가(고객등급, 연체기록 등)

6. 신청방법: 협약은행을 통한 상담 및 신청

-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체크리스트 확인 후 상담신청
(체크리스트 상 모두 '아니오' 인 경우만 보증서 발급 가능)

가. 기 간: 공고일~보증한도 소진시

나. 지원절차



다. 구비서류

- 1) 대표자 신분증(지참)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3)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초본은 1년 이내 거주지 변동 있는 경우만 제출)
- 5) 금융거래확인서(사업자대출 10백만원 초과건, 개인 부동산담보대출건이 있는 경우만)
- 6)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최근 3개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및 대표 명의 각 1부)
- 8) 법인 별도 구비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말소사항 포함, 주민번호 공개)
 - 재무제표(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및 정관 사본

7. 유의사항

가. 보증 가능 여부와 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 중 상기 기재된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특별신용보증지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부실기재로 판명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문 의

가. 협약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상담 및 접수: 21개지점

- 우리은행(6개지점)

지 점 명	가락중앙금융센터	송파구청지점	거여동지점
전화번호	(02)431-0506, 내선 510	(02)422-6847, 내선 310	(02)448-4512, 내선 512
주 소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1층 3호선 경찰병원역 1번출구 104m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본관 1층 2,8호선 잠실역 10번 출구 154m	송파구 오금로 511 신양빌딩 5호선 거여역 4번출구 30m
지 점 명	송파역지점	잠실나루역지점	잠실금융센터
전화번호	(02)415-7961, 내선 512	(02)413-1485, 내선 514	(02)423-3121, 내선 514
주 소	송파구 송파대로 345 8호선 송파역 4번출구 30m	송파구 올림픽로37길 130 파크리오상가 A동 215호, 2호선 잠실나루역 2번 76m	송파구 석촌호수로 72 2호선 잠실새내역 3번출구 203m

- 하나은행(10개지점)

지 점 명	가락금융센터	송파중앙지점	송파헬리오시티지점
전화번호	(02)403-1111, 내선 201	(02)415-1111, 내선 111	(02)3431-1111, 내선 106
주 소	송파구 중대로 13 아이티벤처타워 3호선 경찰병원역 1번출구 104m	송파구 오금로32길 32 1층 8호선 송파역 1번출구 790m	송파구 송파대로 345 상가 A동 2층 8호선 송파역 4번출구 30m
지 점 명	문정동지점	문정법조타운지점	가락중앙지점
전화번호	(02)408-1111, 내선 104	(02)443-1111, 내선 102	(02)402-1111, 내선 101
주 소	송파구 중대로 80 롯데마트 1층 3호선 가락시장역 7번출구 94m	송파구 법원로114 (문정동) 엠스테이트 D동 2층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174m	송파구 동남로 208 극동아파트 5호선 개롱역 4번 출구 358m
지 점 명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잠실역금융센터지점	잠실새내역 금융센터지점
전화번호	(02)417-6370, 내선 132	(02) 418-1111, 내선 337	(02)473-1111, 내선 211
주 소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12층 2,8호선 잠실역 2번 출구 27m	송파구 올림픽로 299 TS 대한제당빌딩 1층 8호선 잠실역 9번 출구 214m	송파구 올림픽로 114 2층 2호선 잠실새내역 4번출구 133m
지 점 명	거여동지점		
전화번호	(02)400-1111, 내선 321		
주 소	송파구 오금로 506 일동빌딩 5호선 거여역 5번출구 30m		

- 신한은행(5개지점)

지 점 명	가락동금융센터	송파지점	잠실남지점
전화번호	(02) 430-6172	(02)417-5385	(02)412-6202
주 소	송파구 송파대로268 한솔섬유빌딩 2층(가락동) 3,8호선 가락시장역 3번출구 76m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상가 A동 2층 8호선 송파역 4번출구 30m	송파구 석촌호수로 133 레이크팰리스상가 B동 2층 9호선 삼전역 2번출구 519m
지 점 명	잠실금융센터	잠실나루역지점	
전화번호	(02)6023-2036	(02)413-2980	
주 소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 2,8호선 잠실역 9번출구 144m	송파구 올림픽로37길 130 잠실파크리오A상가 2층 2호선 잠실나루역 2번출구 76m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송파지점(☎ 1577-6119)

다.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2515)

[붙임]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업종 등

□ 보증금지기업

1.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 신용도판단정보 해당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해당하는 기업
5.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6.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5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나. 제5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5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8.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10.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포함)과 동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1.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12.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